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#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 검 토 보 고

<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>
▣ 한병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775호)

2024. 9.
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# 목 차

Ⅰ. 제안경위 ····· 1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····· 1

Ⅲ. 검토의견 ····· 2

## Ⅰ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한병도의원 등 10인

2. 제 안 일 : 2024. 6. 21.

3. 회 부 일 : 2024. 6. 24.

## 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있음.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(이하 “소방공무원복지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(소방청 차장),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. 또한,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,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,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9조).

## 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소방복지위원회”라 함)의 위원을 현행 “10인”보다 확대된 “15인”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, ② 소방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9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) ① (생 략) | 제9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 ② ----------15명----------. |
|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,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| ③ ----------다음 각 호의 사람 ----------. |
| <신 설> | 1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|

| | |
|---|---|
| <신 설> | 2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|
| <신 설> | 3. 소방청 또는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| ⑤ 위원회 소관---전문적으로 심의하기----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| ⑥ (생 략) | ⑥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. |
| <신 설> | ⑧ 위원의 임기,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| 부 칙 |
| |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,

소방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(1)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(2)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(3)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.

또한, 동법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,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(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)을 3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[1].

이에 따라 현재 소방청은 민간위원 3인, 공무원인 위원 7인 총 10명의 위원으로 소방복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데. 공무원인 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민간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[2].

---

1)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"관계 중앙행정기관"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.
1. 기획재정부
2. 행정안전부
3. 보건복지부
4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
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**3명 이내**로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<소방복지위원회 구성 현황>

| 구 분 | 위원 구성(10명) |
|---|---|
| 위원장(1명) | 소방청 차장 |
| 정부위원(6명) | 소방청(3), 행정안전부(1), 기획재정부(1), 보건복지부(1) |
| 민간위원(3명) | 교육인 (3) |

※ 자료: 소방청

또한, 소방복지위원회는 보건,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[3].

이에 개정안은 소방복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고,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은 법률상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위원 수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, 민간위원 확대라는 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2)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
3)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

참고로, 유사입법례로서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[4]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[5]은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개정안은 제안이유에 특별한 설시 없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였는데(안 제9조제3항제3호),

현재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고[6]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역시 소방공무원

---

4)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
제8조(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)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**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**

5)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제10조의2(신기술·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·서비스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. **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**

6) 「소방공무원법」
제6조(임용권자)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. 다만,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, 휴직, 직위해제, 강등,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.
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.
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
제3조(임용권의 위임) ① 대통령은 「소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, 시·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(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
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.

또한,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전망인데, 대통령령에서 규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.

그 밖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임기,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원활한 법 집행과 적법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[7].

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,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, 관련분야 위원회에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---

7) 「법제업무 운영규정(대통령령)」
제22조(하위법령의 제때 마련)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·총리령 또는 부령(이하 "하위법령"이라 한다)의 제정·개정·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.

| 문 의 처 |
| --- |
| 02)6788-5351 |

## 참고 1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(안)

○ (위원회 구성) 15명(위원장 1, 공무원 6명, 민간위원 8)

- 보건분과

  : 10명[분과위원장(소방청 차장) 1, 공무원 6, 민간위원 3]

- 안전분과

  : 9명[분과위원장(소방청 차장) 1, 공무원 6, 민간위원 2]

- 복지분과

  : 10명[분과위원장(소방청 차장) 1, 공무원 6, 민간위원 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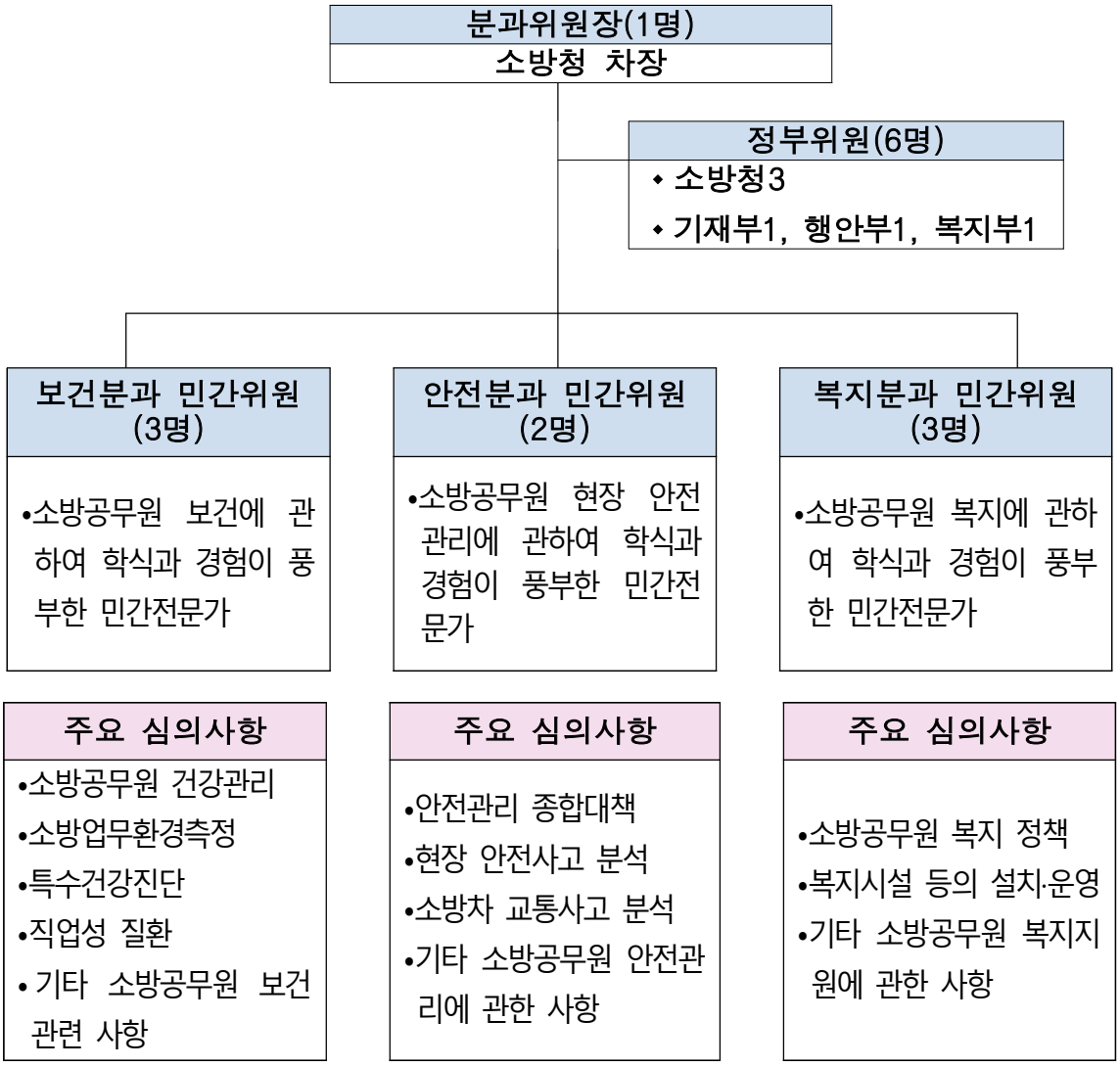


※ 자료 : 소방청

## 참고 2 소방복지위원회 활동 내역(최근 3개년)

| 구 분 | 총계 | 위원회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합 계 | 출석회의 | 서면회의 |
| 2021년 | 1 | 1 | | 1 |
| 2022년 | 2 | 2 | | 2 |
| 2023년 | 1 | 1 | | 1 |
| 총계 | 4 | 4 | | 4 |

※ 자료 : 소방청